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26

발의년월일 : 2005. 8. 23.
발 의 자 : 이정기 의원외 2인

1. 개정이유

2005년 8월 5일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규정의 개정으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일 70,000원 이내"에서 "일 100,000원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계룡시의회의원들의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의 〈별표1〉의 회기수당지급기준표의 회기수당을 "일 70,000원"을 "일 100,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임.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6〉

4.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발췌 1부.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별표 1]

지 급 기 준	회 기 수 당
의원 1인	일 100,0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table>
<tr><th>개 정 안</th><th>수 정 안</th></tr>
<tr><td>〔별표 1〕
회기수당 지급기준표(제3조관련)
<table><tr><th>지급기준</th><th>회기수당</th></tr><tr><td>의원 1인</td><td>일70,000원</td></tr></table></td><td>〔별표 1〕
회기수당 지급기준표(제3조관련)
<table><tr><th>지급기준</th><th>회기수당</th></tr><tr><td>의원 1인</td><td>일100,000원</td></tr></table></td></tr>
</table>

참 고 법 령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별표6〉

구 분	회기수당 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범위
시 · 도의회의원	일 110,000원 이내	별표7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의 범위 이내
시 · 군 · 자치구의회의원	일 100,000원 이내	

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2003. 12. 10. 조례 제14-5호
개정 2004. 2. 20. 조례 제97-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000원을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04. 2.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회기수당 지급) ①회기수당의 지급은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지급한다.

제4조 (출석일수 계산)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직무로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04. 2. 20.>

제5조 (여비지급) ①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의 2분의1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③의원의 국내·외 공무여행은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준용한다.<개정 04. 2.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호 2004.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2004. 1. 1일부터 시행한다